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91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03 월 20일

통 계 청 장

1. 통계의 명칭 : 결핵환자신고현황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질병관리청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117107호 [1976.12.30.]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3.03.14.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사유
작성항목 (결과표)	• 결과표 14개	• 결과표 15개 - 추가 3개 - 삭제 2개 - 수정 1개	- WHO, 질병관리청의 내성결핵 정의 및 치료·관리방법 등이 변경되었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내성결핵 통계 산출방법이 변경되어 관련 작성항목을 변경하고자 함